

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9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2월 25일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환경분쟁 조정법」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“사건”이란 용어를 신설되는 안 제2조의3 조문에 반영하고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 골자

- 안 제2조의2 조 제목 및 각 호의 부분 중 “위축 해제”를 “해축”으로 함.
- 안 제2조의3 중 “안건”을 “사건”으로 함.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의2 조 제목 중 “위촉 해제”를 “해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의 부분 중 “위촉 해제”를 “해촉”으로 한다.

안 제2조의3제1항 본문 및 각 호 중 “해당”을 “해당 사건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당 안건의”를 “해당 사건의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2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 	<p>제2조의2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~ 5. (개정안과 같음)</p>

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〈신 설〉

제2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·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
1. 위원이 해당 심의·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심의·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3. 해당 심의·자문 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

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

제2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·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
1.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심의·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심의·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3. 해당 사건의 심의·자문 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

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

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
직접 또는 위원의 회피 신
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
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
다.

신청하여야 한다.

③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
2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

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2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·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
1.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심의·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심의·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3. 해당 사건의 심의·자문 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

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중 “소집하고자 하는”을 “소집하려는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2조의2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

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〈신 설〉

제2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·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
1.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심의·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2.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심의·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3. 해당 사건의 심의·자문 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

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4조(조정위원회, 재정위원회, 중재위원회의 운영 등) ① (생략)

제4조(조정위원회, 재정위원회, 중재위원회의 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조정위원회, 재정위원회, 중재위원회 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(생략)

② -----
----- 소집하려는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